

제2631호
2019. 1.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규 칙

- 제7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2
- 제7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 공 고

- 제2019-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
 릿>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규	칙
---	---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2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부과 징수와 관련한 근거가 있어 규칙의 실효성 없음.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폐지 (제정일 : 1988. 5. 1. 규칙 제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 지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지원기준 및 방법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지원대상자 (제2조)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급, 지원방법 (제3조~제5조)
 -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 관리, 기타(제6조~제8조)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9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통합 및 단서 신설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자치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급 기준 통합 및 지급 금액 개정 (시행규칙 [별표])
- 강사수당의 기준 범위 외 지급 가능 규정 신설 [별표]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4, FAX : 3396-8613, E-mail : ahr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별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자원봉사자	일 반	1일(2시간 ~ 8시간)	7,000원
	실무전담	1일(4시간 ~ 8시간)	20,000원
강사	프로그램 강사	시 간 당	24,000원 ~ 35,000원

※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첨부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자원 봉사 자	일 반	1일(2시간 ~ 8시간)	7,000원	자원 봉사 자	일 반	1일(2시간 ~ 8시간)	7,000원	
	실무전담	1일(4시간 ~ 8시간)	20,000원		실무전담	1일(4시간 ~ 8시간)	20,000원	
강 사	일 반 (어학, 학습, 인문학, 심신단련, 문화교양, 취 미, 어린이, 어르신 등)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 자, 미술, 컴퓨터, 서예, 수묵화, 한국화, 수채화, 꽃꽂이, 수지침, 관상학, 풍수학, 종이접기 (공예), 논술, 주산, 하모니카, 통기타, 단전호흡, 기공체조, 탁구, 발레, 요가, 건강체 조, 타이치, 켈트 등	시간당 24,000원	강 사	프로그램 강사	시간당	24,000원 ~ 35,000원	
	레크리에이션 (활동, 전통예술 등)	가요(노래)교실, 국악, 민요,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웰빙, 차밍, 라인, 밸리 등), 에어로빅, 드럼, 밴드교실, 한국무용 등	시간당 35,000원		※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